





자유주의 정보 18-83

최저임금과 장기소득의 관계

최저임금의 인상이 십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감축시킨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. 이에 대하여 인상론자들은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급여인상을 강조해왔다.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이 반드시 장기소득(Long-run earnings)의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

Mercatus Center는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년 실업률 인상 정도와 더불어 인적 자본의 정도 및 장기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. 1994년부터 2014년 동안, 16~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종전의 53%에서 34%로 감소했다. 이는 매우 큰 정도의 급락이라 할 수 있다. 노동 경험은 일종의 인적 자본으로 작용하며, 개인의 장기 소득 중대를 위한 숙련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.

물론 이러한 취업률 저하가 보다 생산성을 높이려는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를 위한 과정일 수 있고, 이 경우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.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업률의 증가 자체가 아닌 그 원인이다.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의 도입과 이민자의 증가가 경쟁 증대및 일자리 감소로 고용 기회를 줄인 것은 명확하다. 나아가 구직의 기회비용이라 할 수있는 교육 투자 수익의 증대 역시 고용률 저하로 이어졌다. 결과적으로, 최저임금 인상과이민자의 증가 그리고 교육의 투자 수익 증대의 3요소가 모두 청소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다. 이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드러났다.

특히 2000년 이래로 16~17세의 청소년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막대했다. 최저임금 인상은 청소년 일자리를 구축시킴으로써 반일제 및 전일제 일자리 없이 학업에 만 종사하는 학생들을 늘리는 영향이 있다. 따라서 만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의 효과와 인적 자본 증대의 정의 효과가 결합하여 정의 결과가 나온다면,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.

그러나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인적자본투자 간에는 반비례의 결과가 드러났다.

다시 말해서, 최저임금에 따른 노동 기회의 감소는, 청소년들의 숙련성을 저하시키고, 이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.

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높은 최저임금으로 단기적 수혜를 볼 수 있지만, 인상된 최저임금이 청소년들의 장기 소득에 영향이 없거나 부(-)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. 이는 적어도 최저임금 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자들에게는 유의미한 결과이다. 일시적 임금 인상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여부이고, 공식 교육과정으로는 채득할 수 없는 인적자본의 발전이기 때문이다.

2014년 이래로 미국의 21개 주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. 29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구의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(시간당 7.25불)을 초과하고 있다. 주에서 지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임금이 상회하는 지역의 경우도 41건이나 되었는데, 그중에는 최고 시간당 15불도 있었다.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하되는 것이 개인의 장기 소득은 물론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발휘하는 점을 다시금 반추할 때이다.

본 내용은 https://www.heritage.org/jobs-and-labor/commentary/new-study-shows-minimum-wage-puts-damper-long-run-earning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.

번역: 박성수

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://fen.or.kr/?p=3485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